

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5-036호

## 「2025년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」

### 참여 기업 모집공고

한글의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한글 콘텐츠를 생산하고,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「한글콘텐츠 창업가」를 발굴·육성하고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4월 2일

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#### 1

####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로컬콘텐츠타운(조치원) 내 한글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하고,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한글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
- (사업기간) 선정일 ~ 2025. 12. 31.
- (지원대상) 사업대상지인 '세종 로컬콘텐츠타운\*'에서 한글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(예비)창업자
  - \*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(예비)창업자
- (선발규모) 총 12개사 내외

□ (지원내용) 사업화자금(최대 3천만원),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

<b>사업화 자금</b>	+	<b>성장지원 프로그램</b>
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		BM 고도화, 애로사항 해결 멘토링, 네트워킹, 판로지원 행사 운영 등

□ 지원절차

모집·신청	⇒	서류·발표평가	⇒	콘텐츠 개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대상자 모집</li> <li>* 신청: 4.7.(월) 10:00 ~ 5.2.(금) 11:00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류·발표평가를 통한 로컬크리에이터 선발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화자금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</li> <li>■ 네트워킹·사업화(교육)·판로지원 등 프로그램</li> </ul>
'25.4.2.(수)~5.2.(금)		5월		5월~ 12월

2

**세부 지원내용**

□ 사업화 지원

- 한글 관련 제품·서비스\* 개발 및 브랜드(CI, BI) 고도화, 로컬 커뮤니티 형성, 사업 홍보·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3천만원 차등 지원

\* 세종대왕, 한글 자모 등 상품화가 가능한 한글 관련 유·무형 콘텐츠

※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

◆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

- 사업비는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통해 집행 가능
-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
-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(사업비카드)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
-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
-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
-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
-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, 목적 외로 사용 불가

< 총 사업비 집행항목 세부사항 >

집행항목	집행내역
개발	○ 신제품 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
브랜드	○ 브랜드(CI, BI), 디자인 등 용역비
홍보	○ 마케팅·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,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
커뮤니티 형성	○ 축제 등 로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용역비
기타	○ 행사 운영,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
수수료 및 사용료	○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
	○ 브랜드(CI·BI)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
	○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
전문가활용비	○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
임차비	○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, 장비 임차비
재료구입비	○ 신제품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
사업활동비	○ 역량개발,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·학회·교육 등 참가비

※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

□ 성장지원 프로그램

- (교육·멘토링) 신제품 개발, 비즈니스 고도화, 투자·수출·지재권·판로, IR역량 강화 등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
- (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) 판로개척, 인사이트 및 네트워킹 확장을 위한 관내·외 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
- (지역연계) 지역주민 참여, 방문객 유치 등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3

신청 및 접수

□ (신청기간) 2025. 4. 2.(수) 09:00 ~ 2025. 5. 2.(금) 11:00

※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수 건이 급증하여,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□ (신청방법) e-mail 접수\* / lleesc0316@ccei.kr

\* (메일제목) 한글콘텐츠창업가 지원사업 신청\_기업명

※ 신청접수 당일 17시(접수 마지막날은 11시) 이후 접수확인 메일 일괄 회신 예정  
으로 메일을 통한 접수 확인 필수

□ (제출서류) 작성 서류는 [서식]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hwp 파일로  
첨부 하며, 나머지 발급 서류는 스캔본 첨부

구분	제출서류명		비고	
필수	1	사업신청서		
	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	
	3	사업계획서		
해당 시	4	사업자등록증	예비창업자 제외	
	5	사업자등록증명원		
	6	국세 납세증명서		
	7	지방세 납세증명서		
	8	기창업자		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('22년~'24년)*
	9	법인		법인등기부등본
	10			법인 국세납세증명원
	11			법인 지방세납세증명원
	12	가점		신청자가 청년인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

\*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한 해부터 '24년까지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제출

## 4 평가 및 선정

□ (평가절차)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선정

① 서류 평가	② 발표평가	③ 최종선정
서류평가(100+가점)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	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	'발표평가(100점)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(단, 60점 미만 제외)

\* 신청자격(업종, 사업자등록상태, 국세·지방세 체납 등) 요건검토는 서류접수일로부터 최종  
선정시까지 상시 진행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

## □ 평가 방법
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(가점 반영)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(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선정
  -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%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- (발표평가)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가능성(사업성 등)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
  - \* 발표평가(PT 양식, 지표 등)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### < 평가지표 >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한글연계 (50)	• 한글문화 이해도 및 활용도	25점
	• 한글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	25점
성장 가능성(50)	• 한글콘텐츠의 개발동기 및 목적(필요성)	15점
	• 사업화 전략,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	20점
	• 자금 조달·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, 성과창출 전략	10점
	•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 역량	5점

## □ 우대지원

- (청년)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\* 가점 2점
  - \* (관련근거)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
  - ※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

## □ 최종선정

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사업화 자금 배정
  -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(3천만원~2천만원)
  - ※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## 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※ (콘텐츠 개발) ~ '25년 9월 말까지

※ (사업비 집행) ~ '25년 11월 말까지

## 5

##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교부·집행·정산·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
-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,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
- 예비창업자 및 신규 공간 개업의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사업대상지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·표절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문화체육관광부,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중간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## 6

## 문 의 처

### □ 사업문의

- (메일) lleesc0316@ccei.kr
- (유선) 044-999-0238

참고1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'25년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※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※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